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주관기관:



수행기관:



제 출 문

환경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참 여 연 구 진

Ⅰ 주관: 한국환경연구원 (KEI)

연구책임자	정우현	사회환경연구실 실장/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배현주	환경위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다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연구위원
	이호진	사회환경연구실 위촉연구원
	서은주	사회환경연구실 전문연구원
	마아랑	사회환경연구실 위촉연구원

Ⅰ 공동: 경기연구원 (GRI)

연구책임자	이은환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강철구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덕영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김 욱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소영	경기연구원 연구원

차 / 례 /

제1장 과업의 개요	3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5
1. 현황 및 자료 분석	5
2.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시범 수립	5
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6
제3절 과업의 수행 체계	8
제4절 주요 성과 및 활용방안	9
제2장 현황 및 자료 분석	13
제1절 환경보건 정책 동향	13
1. 환경보건법 개정('21.1)	13
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17
제2절 지역 환경보건 정책추진 여건	23
1. 조례 제정 현황	23
2. 계획 수립 현황	24
3. 담당조직 현황	25
제3절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26
1. 기존 자료항목	26
2. 환경보건 관련 주요 자료제공 현황	29
제4절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	35
1.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	35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38
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42
4. 지역환경보건계획에의 시사점	44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49
제1장 총론	53
1. 지침의 목적	53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위상	53
3.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격	54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54
1. 계획수립의 주체	54
2. 계획의 명칭	54
3. 계획기간 (목표연도)	55
4. 계획수립의 대상 및 범위	55
5.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57
6. 관련 계획과의 연계·부합성	58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절차	59
1. 법령상 절차	59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절차	61
제4장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62
제5장 기초조사 및 분석	63
1. 지역 환경보건 현황조사	63
2. 지역 이슈 수집 및 의견수렴	65
제6장 주요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66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67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73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77
제7장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82
【부록 I】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83
【부록 II】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및 현황	87
【부록 III】 지역 현황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목록	88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97
----------------------	----

참고문헌	101
------------	-----

표 / 차 / 례 /

〈표 1-1〉 환경보건법 개정('21.1) - 지역환경보건계획 관련 조항	4
〈표 1-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부문	7
〈표 1-3〉 공동연구 수행 체계	8
〈표 2-1〉 환경보건 계획 체계: 기존과의 비교	14
〈표 2-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4대 전략 및 주요과제	19
〈표 2-3〉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19
〈표 2-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20
〈표 2-5〉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20
〈표 2-6〉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21
〈표 2-7〉 환경보건 조례 제정 현황	24
〈표 2-8〉 기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25
〈표 2-9〉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항목	26
〈표 2-10〉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 기초자료 항목	27
〈표 2-11〉 충남도 제2차 환경보건계획 - 기초자료 항목	28
〈표 2-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0)의 구성	37
〈표 2-1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1)의 구성	40
〈표 2-14〉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산업부 2019)의 구성	43

그림 차례

〈그림 2-1〉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29
〈그림 2-2〉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절차	38

제1장

과업의 개요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 제3절 과업의 수행 체계
- 제4절 주요 성과 및 활용방안

제1장 /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보건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2)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를 설정
 - 환경보건법 개정('21.1)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의무화(제6조의2, 신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2, 신설), 시·도지사에게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제17조)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다수 포함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노정
- 특히, 환경보건법 개정('21.1)¹⁾에 따라 처음으로 각 광역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 (기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
 - (개정) 광역지자체(시·도)는 지자체별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시군구의 환경계획에 이를 반영
-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될 각 지자체(광역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

1) 2021.1.5 개정, 2021.7.6 시행

〈표 1-1〉 환경보건법 개정('21.1) - 지역환경보건계획 관련 조항

환경보건법 ('21.1.15 개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에 본 과업에서는 관련 현황 등의 분석과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 지자체 관계자·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협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 및 자료 분석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관련된 현황 및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
 - 환경보건 정책 동향 및 추진여건: 환경보건법 개정(21.1),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추진여건: 조례, 계획, 조직·인력 등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2.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시범 수립

- 경기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2021~2030) 시범 수립
 - (계획수립 시범사업) 지자체 여건 및 현황파악, 가이드라인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1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실시
 - ※ 지자체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경기도(경기연구원)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을 고려한 경기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범 수립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시범사례로 활용 및 지역계획 시범수립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 등

1) 지역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 경기도 지역적 특성, 자연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지역 현황분석
-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 및 미세먼지, 수질 등 환경보건 위험요인 현황분석

- 군 관련 시설 인근지역, 주요 산업단지 등 주요 환경보건 취약지역 현황분석
- 국내외 환경보건 정책 동향 및 국내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사례 조사

2) 기본방향 수립

- 경기도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비전, 목표, 주요 전략 수립

3) 부문별 추진과제 발굴

-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4) 기타: 계획 추진기반 및 관리방안 등

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될 각 지자체(광역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안) 마련

1) 총론

- 가이드라인의 목적, 계획의 법적 근거, 계획의 위상 및 성격 등 총론적 사항

2)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 계획수립의 주체, 계획의 명칭, 계획기간(목표연도), 계획수립의 대상 및 범위
-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관련 계획과의 연계·부합성

3) 계획수립의 절차

- 법령상 절차,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

4) 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 지역환경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5) 기초조사 및 분석

- 지역 환경보건 현황, 오염 및 위해 현황 등 지역 환경보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활용 가이드

- 지역 환경보건 현안·이슈 수집 및 지역주민 인식·의견 조사 가이드

6) 주요 부문별 계획기준

- 각 부문별 계획수립의 방향, 주요 내용, 고려사항 등

〈표 1-2〉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부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해인자(일반환경, 생활환경)의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 환경유해인자 대책 마련 - 환경오염 건강피해 우려지역의 대책 마련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 시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
|--|

7)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 계획의 추진체계: 조직, 재정, 일정, 이행관리 등
- 계획의 이행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8) 기타 참고자료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의 주요 내용
-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및 현황
- 기초 현황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목록

제3절 과업의 수행 체계

- 본 과업은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경기연구원(GRI)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됨
 - KEI: 과제 총괄, 현황 및 자료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연구원: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범 수립

〈표 1-3〉 공동연구 수행 체계

과업의 내용	담당기관	보고서 구성
○ 총괄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KEI	-
1) 현황 및 자료조사	KEI	제2장
2)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범 수립	경기연구원	(별권 발간)
3)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KEI	제3장

- 지역환경보건계획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역 의견수렴
 - 기존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충남도, 서울시)의 해당 계획수립 담당자
 -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 소속의 계획수립 연구책임자
 - 시범지역인 경기도(경기연구원) 포함
 - 최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담당자(연구책임자)
 - 연구자문회의 및 수시 협의를 통해 지역 환경보건 정책 관련 동향, 여건, 애로점 파악 및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제4절 주요 성과 및 활용방안

- 본 과업의 주요 성과물은 (1)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시범 수립 및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 및 체계, 지역기반의 환경보건 정책동향 및 지역 환경보건 정책 여건, 계획수립의 기존 및 시범사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범위, 부문별 수립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 광역시·도의 법적 의무가 된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및 참고자료로 활용

○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례(경기도)의 생산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범적용 사례로 활용
- 경기도 환경보건계획(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초안으로 활용
- 타 지자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례로 활용

제2장

현황 및 자료 분석

- 제1절 환경보건 정책 동향
- 제2절 지역 환경보건 정책추진 여건
- 제3절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 제4절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

제2장 / 현황 및 자료 분석



제1절 환경보건 정책 동향

1. 환경보건법 개정(21.1)

- 환경보건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변화가 진행 중
 - 최근 환경보건법 개정(21.1) 내용에 몇 가지 사항이 반영됨

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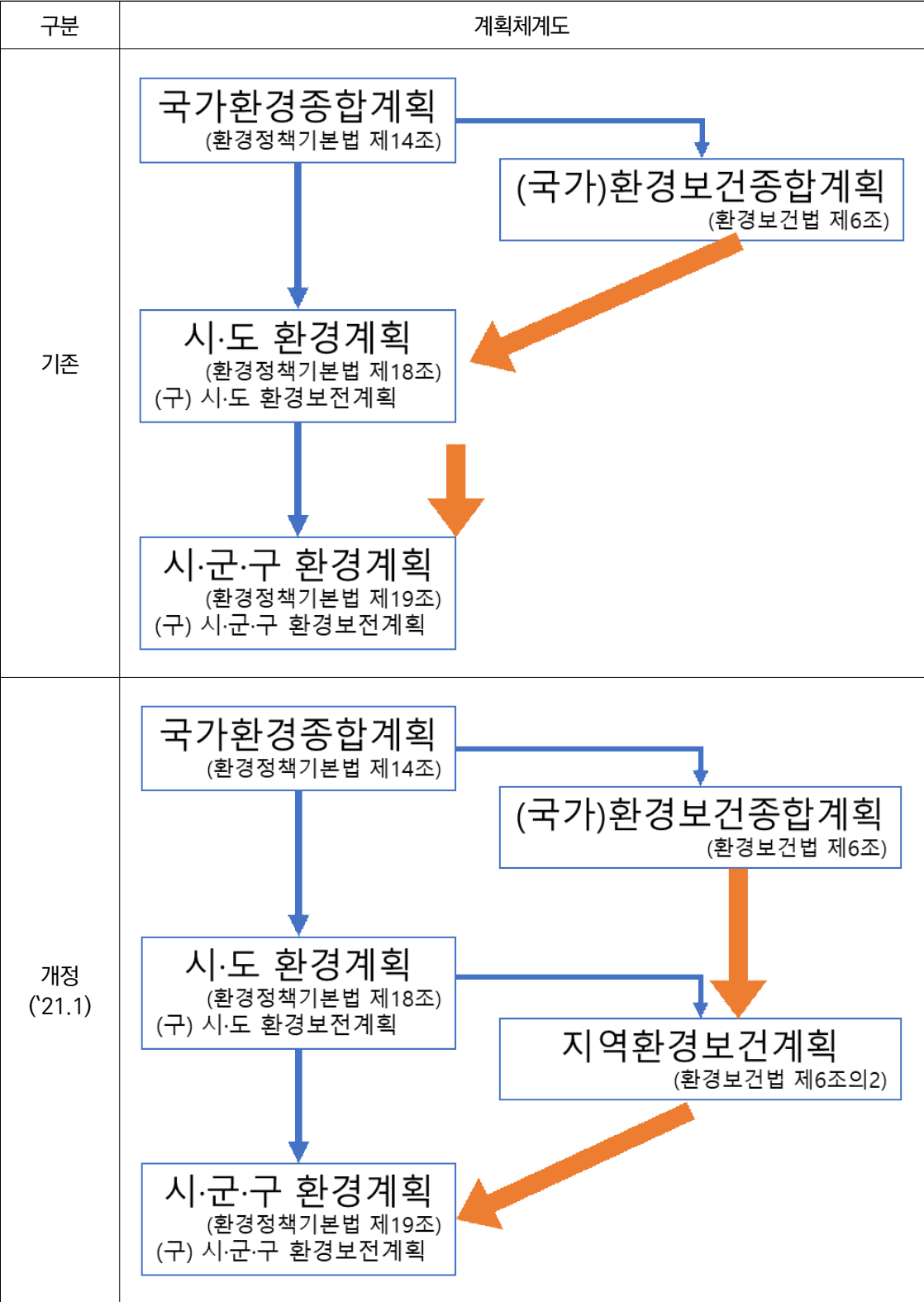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의무화(제6조의2, 신설)
 - 기존에는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지역계획이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광역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 ※ 다만 법적 의무화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온 지자체 사례 존재: 충남 환경보건종합계획('12~) 등

○ 기존 계획체계와의 비교

- 기존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나(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 지자체에서는 환경분야 종합계획인 지자체 “환경계획”²⁾ 중 환경보건 분야에 이를 반영하는 체계였음
- 법 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시도)는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환경분야 독자 계획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 동법 개정(21.1) 전에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으로 불림.

〈표 2-1〉 환경보건 계획 체계: 기존과의 비교



○ 의무화 적용범위: 광역지자체(시·도)

-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경우 여전히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 소속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내용은 시·군·구 “환경계획”에 반영하여야 함(환경보건법 제7조 제3항)

○ 의무화 적용시점

- 각 광역지자체(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³⁾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2, 신설)

-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2 제2항)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 관할구역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제17조)의 처리 등

○ 위원회의 구성

-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제10조의2 제3항)
 - 환경보건 전문가
 -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해당 조항(제6조의2, 신설)은 2021년 7월 6일 발효되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875호, 2021.7.6)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 소속 공무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다.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제17조)

- 건강영향조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기존과의 비교

- 기존에는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장관에게만 청원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법(21.1)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청원할 수 있게 됨
- 특히, 환경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지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친 경우, 지자체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은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되어 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됨

○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역할 구분 (제17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이 처리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 지자체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⁴⁾

가. 계획의 주요 내용

- 비전: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
- 목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통한 환경성 질병부담 완화
- 4대 원칙:
 - (1) 사전주의 원칙
 - (2) 수용체 지향 원칙
 - (3) 환경정의 구현 원칙
 - (4) 참여와 알권리 보장 원칙
- (종전 계획과의 비교) 기본방향
 - 환경보건의 영역을 기존의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중심’에서 ‘피해 대응·복구’를 포함하는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로 확장
 - 공급자 위주의 환경유해인자 조사·연구에서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를 강화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마련
- 정책방향:

4)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 환경보건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대응·복구’까지 포함하는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로 확장
- (사전 관리)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기확인된 환경유해인자의 적극적인 노출 관리 실시
- (사후 대응) 환경오염피해 사전-발생-사후 전 과정에서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 정책영역:

- 기존 환경유해인자와 더불어 미지의 유해요인 감시·관리 확대 및 정책 단위의 지역화
- 경제 성장·기술 혁신·기후변화·세계화 등에 따른 기존 및 신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사전 감시 및 관리 범위 확대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보건정책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

○ 추진주체:

- 정부·지자체·전문가·지역 주민 등 국민참여 거버넌스 확립
- 지역거점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 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체계 구축

○ 성과관리:

- 환경보건종합계획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체계 정립
- 지역별/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지침 제공
-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5년 후 계획의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필요시 수정계획을 수립

○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

〈표 2-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4대 전략 및 주요과제

4대 전략		주요과제
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및 환경개선 체계 구축
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환경보건 조직 역량 강화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

○ 4대 전략별 세부 과제:

〈표 2-3〉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략	주요과제	세부과제
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1-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및 고도화
		1-2. 전생애 건강영향평가 코호트 및 패넬조사 수행
		1-3. 생활환경위해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화
		1-4. IoT 기술 기반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 구축
		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
		1-6. 환경오염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기반 구축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2-1.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력 강화
		2-2.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조사 및 모니터링
		2-3.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2-4.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
		2-5. 환경유해 미생물 건강위해 모니터링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3-1.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3-2.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고도화 및 환류 체계 구축

〈표 2-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전략	주요과제	세부과제
2. 환경유해인 자 노출 관 리 강화	생활환경 불편·위 해요소 적극 관리	1-1. 실내공기 관리 강화
		1-2. 실내라돈 관리 강화
		1-3. 인공조명(빛공해) 관리 강화
		1-4. 전자파 관리 강화
		1-5. 소음 및 진동 관리 강화
		1-6. 석면 안전 관리 강화
		1-7. 수용체 중심의 환경기준·정책 수립 및 평가
	화학물질로부터 안 전한 사회 조성	2-1.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평가
		2-2.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강화
		2-3. 산업계 화학물질 자율관리 지원
		2-4.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2-5. 산업계 제도 이행 지원 강화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3-1. 어린이·여성·노인 대상 환경보건 지원사업 강화
		3-2.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3-3.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표 2-5〉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전략	주요과제	세부과제
3. 환경성 건강 피해 대응 능력 강화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1-1. 환경성 건강피해 발생시 신속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1-2. 환경보건 건강피해 사후관리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1-3.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시스템 구축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및 환경개선 체계 구축	2-1.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비
		2-2. 환경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2-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
		2-4. 석면피해 구제서비스 강화
		2-5.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표 2-6〉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4대 전략별 세부과제: (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전략	주요과제	세부과제
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1-1.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1-2.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1-3.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2-1. 환경보건지표 기능 재정립 및 운용 시스템 구축
		2-2.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공개
		2-3. 환경보건 관련 데이터의 통합분석 및 활용
	환경보건 조직 역량 강화	3-1. 환경보건 관련 조직 정비 추진
		3-2.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
		3-3. 환경보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	4-1. 전국민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 추진
		4-2.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추진
		4-3. 환경보건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R&D 추진
		4-4. 국가 환경보건 바이오뱅크 구축 및 운영
		4-5. 환경보건 국제 네트워크 확대

나. 지자체 역할강화에 관한 시사점

- 환경보건 정책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상에 여러 군데 포함됨
 - 기존의 환경유해인자별 예방·관리 중심 접근으로부터 피해 대응·복구가 강조되는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로 확장되면서 지역단위 접근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체계로부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변화
 -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를 주요과제 중 하나로 설정

다.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원칙과 주요 내용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함

- (4대 원칙) 사전주의, 수용체 지향, 환경정의 구현, 참여와 알권리 보장
- 환경오염피해 우려지역, 민감계층, 유해인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조기발견·대응의 중요성 및 지자체의 역할
 - (세부과제 1-1-6) 환경오염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기반 구축
 - (세부과제 3-2-5)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이 강조
 - (세부과제 3-1)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 (세부과제 3-1-3)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시스템 구축
-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추진 기반 및 역량 강화
 - (세부과제 4-1-1)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 (세부과제 4-1-2)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세부과제 4-1-3)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제2절 지역 환경보건 정책추진 여건

○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여건의 미성숙

- 환경보건 분야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계획, 조직 등 측면에서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추진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임
- 다만 최근 지역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동향과 맞물려 조례 제정, 계획수립, 전담 조직·인력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1. 조례 제정 현황

○ 환경보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0년까지 환경보건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단 2개(충남, 서울)
- 최근 (2021년 중) 8개의 광역지자체에서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 말 현재 총 10개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완료
- 이에 더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기도 수원시가 유일하게 조례 제정 완료

○ 환경보건 조례의 주요 내용

- 지역환경보건계획,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환경보건법 개정(21.1)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그 외의 독자적 내용 포함
 - 충남: 환경보건 시책의 기본원칙, 도지사/시장·군수/사업자의 책무, 도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보건 지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
 - 서울: 기본원칙, 시장/사업자의 책무, 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건강피해 역학조사,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관리,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

○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일하게 화학물질 조례와 통합된 형태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라는 이름으로,
-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화학물질 정보공개, 화학물질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

〈표 2-7〉 환경보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역	조례명	제정일자
시도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2018.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2021.12.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2021.11.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2021.8.5
	경기도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2021.10.6
	강원도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2021.12.31
	충청북도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2021.11.5
	충청남도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2014.1.6
	전라북도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2021.8.13
	경상남도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2021.11.4
시군구 (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2020.3.13

주: 2021.12.31 기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계획 수립 현황

○ 환경보건 계획수립 현황

- 최근 환경보건법 개정(21.1) 전에는 지자체의 환경보건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아니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존재
- 충남도의 경우 제1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2~2016)을 시작으로 이미 2번

의 계획을 수립·시행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3년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라는 이름으로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을 도출한 바 있음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의 기본 방향, 원칙, 전략, 추진과제 등

〈표 2-8〉 기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지역	계획명	계획기간
서울특별시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2013~2017
충청남도	제1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12~2016
	제2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17~2020

3. 담당조직 현황

○ 지자체 환경보건 조직 현황⁵⁾

- 대부분 지자체에 환경보건 전담조직은 없고 생활환경과,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등에서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환경보건팀
 - 환경보건 담당인력: 실무사무관 1인 + 주무관 1인
 - 팀 내 주무관 2인은 공중화장실, 공중위생법 등 관련업무 수행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 생활환경보건팀 (팀장 + 주무관 3인)
-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 (팀장 + 주무관 1인)

5) 각 지자체 웹사이트상의 조직도를 바탕으로 분석

제3절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1. 기존 자료항목

○ 기존 환경보건 계획수립에 활용된 기초자료 항목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표 2-9〉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항목

구분		세부항목
매체별 환경오염 현황	일반 환경	- 대기(납,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의 농도)) - 물(BOD, T-P, TOC 농도) - 토양(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의 토양오염도)
	생활 환경	- 실내공기(미세먼지, 총부유세균에 대한 오염도, 이산화탄소 농도) - 실내라돈(연도별 전국 주택 실내 라돈 농도, 지역별 평균 주택 라돈 농도) - 소음·진동(구역별·시간대별 환경소음도 초과정도, 민원건수) - 빛공해(전국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 민원건수) - 석면(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누적 동 수, 지역별 전체 석면 건축물 수) - 녹지환경(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체내 유해물질 농도	중금속 류	- 납(혈중 납 농도) - 수은(혈중 수은 농도) - 카드뮴(소변 중 카드뮴 농도)
	화학 물질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1-하이드록시피렌, 2-나프톨의 농도) - 프탈레이트(성인, 초등학교, 영유아의 농도)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성인, 초등학교, 영유아의 벤질머캅투르산(VOCs의 대사체)의 요중 농도) - 비스페놀A(성인, 초등학교, 영유아의 요중 농도) - 파라벤류(성인남성, 성인여성, 영유아의 농도)
주요 환경성 질환 발생현황	환경성 질환	- 호흡기계 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천식 입원률·진료비) - 알레르기성 질환(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수·진료비) - 심혈관계 질환(뇌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환자 수·진료비) - 암(연령표준화 발생률·진료비) - 기후변화 관련 질환(온열질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일반국민·전문가 인식	인식 현황	- 환경보건정책 인식도(일반국민 환경보건 인식도) - 정책 만족도(환경보건 관련 정부 정책 만족도) - 관심이슈(전문가, 일반국민의 관심 키워드) - 정책우선순위(일반국민의 환경보건 정책 우선순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2013~2017)

〈표 2-10〉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 기초자료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 현황		- 서울시 인구 현황 - 서울시 연도별 인구규모 추이 - 서울시 민감계층 인구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주요 도시의 도시면적 - 자동차 등록대수
환경보건 여건	대기오염도 현황	- 황사발생일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 오존 발령일수 - O₃ 오염도 - 주요 도시의 NO₂ 변화 추이 - 서울시 지역별 NO₂ 오염도 현황 - 주요도시의 PM₁₀ 변화추이 - 서울시 지역별 PM₁₀ 오염도 현황
	실내환경 현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 지하철역사 내 라돈농도 -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 용도별 환경소음 측정결과
	석면	- 석면함유 실태 조사 결과
	수질오염	- 사업장 폐수 - 한강 수질오염(한강 본류의 BOD 변동) - 먹는물 및 지하수
	폐기물 및 토양 오염도	- 민·관원 의뢰 폐기물 검사 결과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기후변화 전망	- 최근 10년 연평균 기온 - 열지수의 기준범위 및 영향
	어린이 환경성 질환 현황	- 구별 환경성질환 입원환자 수 - 구별 환경성질환 외래환자 수
	기타	- 어린이집 유해요인(PVC 제품의 비율) - 납 함유량 - 카드뮴 함유량

자료: 최경호 외(2013),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pp.58~73

- 충청남도 제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2017~2020)

〈표 2-11〉 충청남도 제2차 환경보건계획 - 기초자료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반 현황	지역 특성	- 입지(행정구역) - 지형(표고, 경사도) - 수계 - 기후(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자연 환경	- 생태자연도 등급별 개소 및 면적 - 공원현황(개소, 면적)
	인문, 사회, 경제	- 인구(인구수) - 취약계층(15세 미만인구, 65세 이상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 주택(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율) - 토지이용(지목별 면적 및 구성비, 용도지역별 면적 및 구성비)
환경 보건	환경 현황	-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대기, 수질, 소음 시설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별 배출시설 분포도 - 폐수배출량별 폐수배출업소 분포도 - 토양오염 우려지역 분포도 - 소음·진동유발시설 분포도 -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환경 보건 현황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 석면광산 현황(광산명, 생산량) •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 폐석면광산 지역 토양복원사업 현황 •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 채석장 석면오염 환경영향조사
		- 유류유출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 유류피해지역 급성 및 증장기 건강피해
		-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피해
		- 충남 서북부 환경오염취약지역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위해물질(IARC 1) 배출량 •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 환경성질환: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유병자수
		- 라돈: 시·군별 주택 라돈 농도현황
		- 빛공해: 피해유형별 민원 발생 수

자료: 충청남도(2017.2),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0)』

2. 환경보건 관련 주요 자료제공 현황

○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 국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총 54개로 파악되며,⁶⁾
 - 이 중 환경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총 32개,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22개
- 정보시스템 외에 통계연보, 연간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
 - 대기환경연보, 국토모니터링보고서 등

〈그림 2-1〉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출처: 윤정호(2021)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 대기환경 분야

○ AirKorea: 대기오염도 실시간 정보시스템

- <https://www.airkorea.or.kr/>
- 운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실시간 대기오염도, 시도별 월별 대기오염도, 권역별 주의보·경보 발령 내역 등

6) 윤정호(2021)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내부자료)

○ CAPSS⁷⁾: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 <https://www.air.go.kr/jbmd/sub43.do?tabPage=4>
- 운영: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연도별·지역별·부문별 대기오염배출량 제공

○ 대기환경연보

-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
- 발간: 국립환경과학원
- 연도별·월별 지역별·측정소별 대기오염도,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대기환경기준 초과 현황 등 (pdf, xls)

□ 물환경 및 토양·지하수 분야

○ 물환경정보시스템

- <http://water.nier.go.kr/>
- 운영: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수질측정망, 생물측정망, 녹조(조류) 등 각종 물환경 데이터 정보 통합제공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 <https://sgis.nier.go.kr/>
- 운영: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토양측정망, 토양오염실태조사, 지하수수질측정망 등

7)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기정책지원시스템)

□ 화학물질 및 폐기물 분야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https://icis.me.go.kr/>
- 운영: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 배출량, 통계, 화학사고 등 화학안전 관련정보 통합제공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 <https://icis.me.go.kr/prtr/>
- 운영: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연도별·지역별·매체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자가매립량 등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https://www.recycling-info.or.kr/>
- 운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통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등

□ 생활환경 분야

○ 생활환경정보센터

- <https://iaqinfo.nier.go.kr/>
- 운영: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전국실내라돈지도 등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https://asbestos.me.go.kr/>

- 운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석면건축물 현황,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등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https://www.noiseinfo.or.kr/>
- 운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소음진동측정망 실시간정보, 통계정보 등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 <https://www.inair.or.kr/>
- 운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실시간 정보 등

□ 환경성질환 등 의료데이터 제공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 <https://opendata.hira.or.kr/>
- 운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빅데이터 활용·분석, 의료통계 등

□ 일반현황(사회·경제 등) 및 기타 자료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

- <https://kosis.kr/>
- 운영: 통계청
- 각종 주요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 지역별·연령별 인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수급가구수, 등록장애인수, 녹지면적, 공원수, 대기오염, 폐수발생 등

○ 복지로 복지통계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dmMnuParam=column26>
- 운영: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등 주요 복지통계 시각화 제공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https://data.kihasa.re.kr/>
-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 및 복지 관련 국내기관별 통계정보의 통합제공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산업단지현황지도

- <https://www.kicox.or.kr/home/mwrc/policyRsrch/fdrmPblictN/fdrmPblictN04.jsp>
- 운영: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현황 지도 등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모니터링보고서

-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 국토모니터링보고서(pdf): <http://map.ngii.go.kr/ms/pblictN/nationalYearBook.do>

- 운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인구, 건물, 토지 등 주요 국토정보, 공원접근성 등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https://data.kma.go.kr/>
- 운영: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폭염일수, 한파일수 등 기후통계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 <http://taas.koroad.or.kr/>
- 운영: 도로교통공단
- 교통사고 및 교통여건: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등

□ 정부·지자체 내부자료 활용

- 규제현황, 지도·단속현황, 실태조사 결과, 민원현황 등 정부·지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경우 자체 내부자료 활용
- 어린이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
-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
- 미세먼지, 교통소음, 조명환경 등 관리구역 지정 현황
- 환경보건 조례 제정 현황·계획, 담당조직 및 인력, 거버넌스 현황 등

제4절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⁸⁾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 관련분야 지자체 행정계획 수립 지침 및 가이드라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자체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야 할 내용과 형식 등을 참고하고자 함

1.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⁹⁾

○ 개요

- 지자체 환경계획¹⁰⁾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환경부)가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임
- 광역시·도 대상의 지침과 기초시·군·구 대상의 지침을 별도로 발간

○ 법적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및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본 절은 명수정·정우현(2019)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pp.53-66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9) 환경부(2020.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환경부(2020.12)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10)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1.1) 전까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이라 불림

○ 계획의 성격:

-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모두 반드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 계획

○ 가이드라인의 구성 (총 30p, 부록 제외)

- 계획과 수립지침의 법적 근거, 목적, 의의, 위상 및 성격 등에 관한 총칙(제1장)과 계획의 수립 대상, 목표연도, 기본원칙, 수립 절차 등(제2장)을 제시
- 제3장은 계획수립 항목(목차)과 항목별로 포함될 주요 내용 제시
 - 또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기초조사와 공간분석 방법을 제시
- 제4장은 항목(목차)별 계획기준을 제시
- 제5장은 계획수립 절차를 제시하고, 이행·모니터링, 관련계획과의 연계 등 제시
- 부록으로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항목,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제시

〈표 2-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0)의 구성

제1장 총칙 (2p)	
제1절 지침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제2절 시·도 환경계획의 의의	
제3절 시·도 환경계획의 위상 및 성격	
제2장 시·도 환경계획의 기본원칙 (3p)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및 목표연도	
제2절 계획의 기본원칙	제3절 계획의 작성원칙
제3절 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계획수립 항목 및 기초조사 (4p)	
제1절 계획의 개요 및 계획수립 항목	
제2절 계획수립 항목별 주요 내용	제3절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제4장 시·도 환경계획 항목별 계획기준 (18p)	
제1절 계획의 개요	
제2절 직전계획의 평가: 성과평가	
제3절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제4절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제5절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제6절 공간환경구조 구상	
제7절 부문별 전략의 수립	
[1] 생태환경 부문 전략	[2] 생활환경 부문 전략
[3] 회복탄력성 부문 전략	
제8절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전략	
제9절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제5장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3p)	
제1절 계획의 입안	
제2절 계획수립협의회의 운영	
제3절 주민참여 제고	
제4절 환경계획의 변경	
제5절 이행 및 모니터링	
제6절 관련계획과의 연계	
붙임 1. 기초조사 및 공간정보 수집 항목 및 내용	
붙임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주요사항	
붙임 3.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표준품셈	

자료: 환경부(2020.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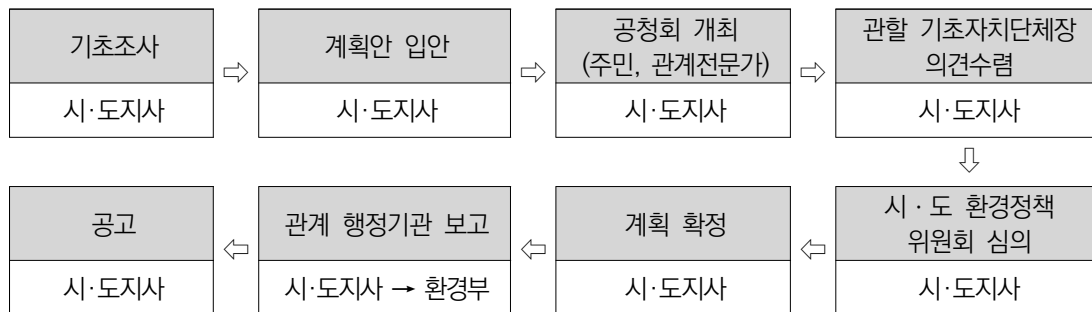
○ 계획의 기본원칙

-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 (2) 위계에 따른 환경계획 간 수직적 연계, 그리고 (3) 국토·도시계획간의 통합관리를 제시

○ 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 계획안 입안, 공청회, 의견수렴, 심의, 확정, 보고, 공고에 이르는 계획수립 절차를 제시

〈그림 2-2〉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절차



출처: 환경부(2020.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p.5

- 주민참여 제고는 지자체 환경계획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관련 원칙과 함께 설문조사, 주민공모, 의견청취 및 공청회 관련 사항을 제시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¹¹⁾

○ 개요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임

11) 환경부 (2021.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및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2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계획의 성격:

-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모두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표 2-1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21)의 구성

제1장 총칙 (3p)	
제1절 지침의 목적	
제2절 지침의 구성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세부시행계획의 일반사항 (2p)	
제1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제2절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기준 (10p)	
제1절 계획의 목차	
제2절 계획의 수립근거 및 범위	
제3절 세부시행계획의 종합평가	
제4절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여건 분석	
제5절 지역 리스크 도출	
제6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제7절 계획의 비전, 목표, 지역 리스크, 전략	
제8절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제9절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	
제4장 계획수립·이행 관련 행정사항 (2p)	
제1절 세부시행계획의 입안, 변경 및 재수립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절 확정 및 공고	
제4절 기타 행정사항	
붙임	1. 세부시행계획 표지 서식
	2. 세부시행계획 목차 예시
	3. 전체 총괄표 작성 양식
	4. 부문별 총괄 작성 양식
	5.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작성 양식
	6.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경위
	7. 제3차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 목록
	8. 국가 기후변화 예비 리스크 목록
	9. 계획수립 참고자료 및 정보

자료: 환경부 (2021.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 가이드라인의 구성 (총 17p, 부록 제외)

- 지침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등을 담은 총칙(제1장)과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수립 절차(제2장) 등을 제시
- 계획의 목차(제3장 1절), 계획의 수립근거 및 범위(제2절)를 제시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제3장 4절), 리스크 도출 방법(제5절)을 제시
- 상위 계획 등과의 연계확보를 위한 관련계획 조사·검토 사항을 제시(제3장 6절)
-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지침을 제시(제3장 7절 및 8절)
- 수립·이행 관련 행정사항 및 절차로서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계획(제3장 9절), 입안·변경, 확정·공고 등의 절차(제4장 1절 및 3절),
-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4장 2절) 방법을 제시
- 관련 양식·서식과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리스크 목록, 계획수립 참고자료 등을 부록에 제시

○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으로 (1) 지역적 특성 등의 고려, (2) 상위계획 등의 고려, (3) 관련 계획 등의 고려를 제시

○ 가이드라인의 특징

-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법론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에 따른 내용이 포함:
 - 국가 대책 수립시 마련된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을 활용하여 지역별 리스크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부문별 적응대책을 마련
- 지역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VESTAP)가 개발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¹²⁾

○ 계획의 개요

-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광역지자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임

○ 법적 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에너지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성격:

- 광역(시·도) 지자체가 반드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

○ 가이드라인(2019)의 구성 (총 24p)

- 이번 개정판 가이드라인의 주요 강조사항을 담은 “수립 지침”(1p)을 제일 앞에 배치
- “지역에너지계획의 개요”(1p)와 “목차체계”(2p)를 간략히 제시
- “목차별 가이드라인 작성지침”(18p)에서 지역계획의 표준목차를 중심으로 목차별로 기술하여야 할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12) 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표 2-14〉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산업부 2019)의 구성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침 (1p) ○ 지역에너지계획의 개요 (1p) ○ 가이드라인 목차 체계 (2p) ○ 목차별 가이드라인 작성 지침 (18p)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계획의 개요, 성격 및 적용범위 제2절 관련 법령 현황 제3절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국내외 여건 변화 분석 제2절 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 및 과제 제3장 지역특성 및 에너지 수급 분석 제1절 자연, 사회 환경 및 지역경제 특징 제2절 지역 에너지 수급추이 분석 제3절 지역 에너지 수요 전망 제4장 계획 수립 제1절 정책추진 여건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제2절 장기 비전 제3절 단기 정책목표 및 로드맵 제4절 수립 절차 제5절 사업 선정 원칙 및 프로세스 제6절 추진체계 제5장 세부사업 제1절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제2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 제3절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제4절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제5절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사용 대책 제6절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제6장 지원 및 평가 제1절 법 제도적 지원방안 제2절 재정적 지원 제3절 추적 및 평가 방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의 특징

- 2019년 가이드라인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맞추어 국가-지역 에너지 계획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지역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기본체계 위주로 구성¹³⁾

○ [참고] 2016년 지역에너지계획 가이드라인 상의 반성¹⁴⁾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1년¹⁵⁾, 2016년¹⁶⁾, 2019년 등 수차례 개정·배포되어 왔음
- 2011년의 가이드라인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과 지역계획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계획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단순 행정보고용 문서일 뿐 지역의 독자적인 비전과 목표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반성
- 이러한 반성에 따라 마련된 2016년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이 지역사회의 여론수렴을 통해 독자적인 비전·목표, 사업발굴, 기획, 추진, 평가 등을 아우른 종합적인 계획의 역할을 하도록 지향하였음

4. 지역환경보건계획에의 시사점

○ 일반적으로 지역계획은 국가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과 지역 고유의 전략 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공존

- 국가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경우:
 - 국가정책 및 계획과의 연계성이 중요
- 지역 고유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경우:
 - 지역 고유의 비전, 전략의 제시 및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정책·사업 발굴이 중요

13) 산업통상자원부(2019)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2

14) 산업통상자원부(2016)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p.1-2

15) 지식경제부(2011)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가이드」

16) 산업통상자원부(2016)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경우 지역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이 중요

- 중앙정부의 세세한 지침에 따르는 하위 실행계획, 행정보고용 문서로서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비전과 목표, 독자적인 사업 등을 마련하는 지역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이 중요
 -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환경오염 취약 우려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이 중요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제시하듯이¹⁷⁾ 지역의 지리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영향, 배출양상, 건강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
- 또한 지역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황과 지역주민 정책수요 분석 등을 수행하여 지역의 주요 환경보건 현안과 비전·목표, 정책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중요
 - 계획 그 자체보다도 계획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Plans are worthless, but planning is everything”)¹⁸⁾한 미국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의 관점과도 일치

○ 한편, 환경보건 분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적 요구도가 높은 편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관련 방법론과 분석도구,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

- 환경보건 정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기술적 요구도가 높은 편으로,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담당자가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
- 다양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과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지역의 계획수립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

17)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p.57

18) Eisenhower(1957); Garcia Contreras et al.(2017)에서 재인용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 목록과 분석도구인 VESTAP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지침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

2021. 12.



목 차

제1장 총론	1
1. 지침의 목적	1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위상	1
3.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격	2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2
1. 계획수립의 주체	2
2. 계획의 명칭	2
3. 계획기간 (목표연도)	3
4. 계획수립의 대상 및 범위	3
5.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5
6. 관련 계획과의 연계 · 부합성	6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절차	7
1. 법령상 절차	7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절차	9
제4장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10
제5장 기초조사 및 분석	11
1. 지역 환경보건 현황조사	11
2. 지역 이슈 수집 및 의견수렴	13

제6장 주요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14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15
(1) 환경유해인자의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15
(2) 환경유해인자 대책 마련	17
(3) 환경오염 건강피해 우려지역 대책 마련	20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21
(1)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21
(2)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23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25
(1)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25
(2)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27
(3) 시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29
제7장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30
부록 I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31
부록 II :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및 현황	35
부록 III : 지역 현황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목록	36

제1장 총론

1. 지침의 목적

- 본 지침은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시·도가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환경보건 계획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위상

- **(지역환경보건계획)**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시장·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임
 - 각 시·도별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여건·현황 및 지역 수요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비전,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담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유연한 계획
- **(시·군·구의 환경보건 계획)** 각 시·군·구의 경우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각 시·군·구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지역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수립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법적 근거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환경보건법 제7조(종합계획 등의 시행)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격

- (수용체 관점의 전략계획) 지역의 다양한 환경매체별 정책·계획을 수용체 관점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조정 및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분야 종합전략 계획의 성격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1. 계획수립의 주체

□ 계획수립의 주체 : 시·도지사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각 광역지자체(시·도)의 법정계획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 수립함
 -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의 환경보건정책 관련 전문기관인 시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보건센터***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시도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출연 정책연구기관(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각 시·도에 설치된 보건·환경 관련 검사·연구기관
 - *** 환경보건센터 :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조사·연구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 중인 대학교, 병원 등
 - 각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함

2. 계획의 명칭

□ “○○시(도) 환경보건계획”

- 시·도가 수립하는 이번 지역환경보건계획의 명칭은 “○○시(도) 환경보건계획(2021~2030)”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 또는 계획의 특징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제 등을 사용하여 변형할 수 있음

3. 계획기간 (목표연도)

□ 계획기간 : 2021~2030년 (10년)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을 고려하여 이번 지역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시간적으로 연동되도록 함

※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의 경우, 법 개정시기를 고려하여 2023~20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 수정시기(2026년)에 맞춰 향후 수정

4. 계획수립의 대상 및 범위

□ 공간적 범위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영향 및 피해의 감시와 건강 위협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가 인접 지역 또는 환경적 영향을 함께 받는 범위의 지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포함 사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률상 범위

- 「환경보건법」 관련 사항 뿐 아니라 지역 환경보건을 위해 필요한 피해구제, 생활환경, 화학물질 관리 및 일반 환경매체별 오염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용체 관점으로 통합하는 상위전략으로서 포함할 수 있음

(참고) ♦ 환경보건 관련 법률 및 계획 ♦			
분야	법률명	계획명	
		국가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종합계획 (10년)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도)
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
	석면피해구제법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5년)	실내공기질관리 시행계획 (시도, 매년)
		-	라돈관리계획 (시도, 요청시)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종합 계획(5년)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 (시도, 매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관리기본 계획(5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시도, 매년) 석면안전 관리계획 (관리지역 지정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계획(5년)	시·도 빛공해방지계획(5년)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5년)	(화학물질관리 계획/시책)**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평가 기본계획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
일반환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
	(대기, 기후변화, 수질, 토양, 지하수 등 각 매체별 환경법률)		

* 시도 법정계획. (시군구단위 법정계획은 없음)

** 시도 화학물질관리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할 수 있으며 법정계획은 아님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1호)

5.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지역의 유해인자/우려지역/인구집단에 대한 환경보건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 지역의 주요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 피해 우려지역, 민감·취약 인구집단 등의 모니터링/조기발견/대응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서 환경유해인자, 우려지역 및 인구집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을 제시
- 지역의 환경오염 및 위해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수용체 관점의 종합전략 마련
 - 수용체(주민건강피해)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환경보건 전담부서의 업무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생활환경 및 일반환경 매체별 오염관리 등 타 환경관리 부서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합동계획임
 - 대책의 범위는 지역 환경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정책 및 생활환경 관리, 피해구제, 화학물질 관리 뿐 아니라 일반 환경매체별 오염관리까지 포괄할 수 있음
- 지역 환경보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국가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보다 지역 고유의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창의적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고유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이 중요
 - 지역 환경보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의 환경보건 현안 및 수요 파악, 지역의 비전·목표 수립,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등이 중요
 - 이를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현황조사, 지역전문가 포럼 및 주민설문, 언론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해 지역 환경보건 현안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파악·수렴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 정착에 기여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을 바탕으로 환경보건 정책에서의 지자체의 전략적·주도적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 구축에 기여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서도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

(참고) ❖ 국가 환경보전종합계획(2021~30) ❖ - 지역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 강화

(현행) 중앙정부 위주의 환경보전 정책 ⇒ (개선) 지역 중심 환경보전시스템 강화

제2차 환경보전종합계획 전략 4-1 : 지역 중심의 환경보전 정책 추진 강화

- 1-1. 지자체 환경보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 1-2. 지자체 환경보전정책 추진 역량 강화
- 1-3. 지역형 환경보전 서비스 지원

6. 관련 계획과의 연계 · 부합성**□ 국가계획과의 연계**

- 제2차 국가 환경보전종합계획(2021~2030)에서 수립한 전략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부록 I 참고)

※ 4대 원칙 : 1) 사전주의, 2) 수용체 지향, 3) 환경정의 구현, 4) 참여와 알권리 보장

□ 지역 환경계획 및 각 부문계획과의 연계

- 해당 지역에서 수립한 시·도 환경계획* 및 관련 부문별 계획**들과 계획방향 및 목표, 사업내용 등에 있어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 (시·도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환경계획”으로, 지역의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 (舊. 시·도 “환경보전계획”)

** (관련 부문별 계획) p4 <참고> 환경보전 관련 법률 및 계획 참조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절차

1. 법령상 절차

※ 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보건법」 및 하위법령상 수립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법 제6조의2제1항)

○ 최초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시한 : ~ 2022년 12월 31일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가 이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세워야 하는 지역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울 수 있다.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법 제6조의2제1항)

○ 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계획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워야 한다.

□ 수립·변경된 계획의 제출(법 제6조의2제3항,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제출 예외 사유

- 총 사업비의 10/100 범위내 사업비 변경 또는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 명백한 오류 수정

❖ 관련 법령 ❖ - 수립·변경된 계획의 제출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6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추진실적의 제출(시행령 제2조의2제4항)

-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관련 법령 ❖ - 추진실적의 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④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획의 변경(수정계획의 수립)(법 제6조의2제2항)

- 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 계획의 변경(수정계획의 수립)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절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절차 ❖		
수립 절차	주요 내용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
기초조사	- 지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 지역주민 설문, 지역전문가 회의, 민원분석, 언론분석 등을 통한 지역 환경보건 이슈 및 정책수요 분석 - 관련 동향 및 사례 분석 -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전 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계획안 마련	- 기본방향, 비전, 목표 및 주요 전략 마련 - 부문별 추진과제 등 세부내용 마련 - 추진체계 마련: 과제별 담당 및 협조부서, 자원조달 계획, 성과지표, 이행관리 및 환류방안 등	
협의 및 의견수렴	- 공청회 등 계획안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 관계기관·기초지자체 등 협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심의	- (설치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법 제6조의2제1항
계획의 확정, 제출 및 공표	- 확정 계획은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 제출 - 지역에 공표	법 제6조의2제3항 (제출)
계획의 이행, 이행관리 및 환류	- 개별 추진과제의 이행 - 정기적 이행모니터링 및 결과의 환류 -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 제출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실적 제출)
계획의 변경 (수정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후 5년 경과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된 계획은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 제출	법 제6조의2제2항 (계획의 변경) 법 제6조의2제3항 (변경계획의 제출)

□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제고

-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할 창구를 마련하고,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주민참여와 의견청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지역별 주민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의 운영
 - 시민참여 계획단의 운영
 - 계획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 등

제4장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 다만,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계획의 구성을 변형할 수 있음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예시) ❖

I. 총론

- 수립배경, 계획의 성격, 수립경과 등

II. 지역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기초조사)

- 지역 환경보건 현황 및 추진여건 분석
 - 환경보건 관련 주요 지표/데이터
 - 환경보건 현안, 기존 건강영향조사 등 추진현황
 - 환경보건 추진기반 및 여건: 조직, 조례, 거버넌스, 전문기관 등
- 지역 이슈수집 및 의견수렴
 - 주민/시민사회 인식조사, 전문가 간담회, 언론분석, 민원분석 등 활용
- 관련 동향 및 사례 분석: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시도 환경계획, 관련 부문계획 내용분석
 - 타지역 기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사례 분석 등
-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 이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III. 지역환경보건계획의 기본 방향

- 기본방향, 비전, 목표, 체계(주요 전략, 부문 등)

IV. 부문별 추진과제

- 부문별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

V.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 조직/거버넌스, 재정, 일정, 이행모니터링/환류 등

제5장 기초조사 및 분석

1. 지역 환경보건 현황조사

□ 환경보건 현황조사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건 현황, 주요 매체별 오염 및 위해 현황, 기타 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함

□ 자료의 수집

- 자료조사는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계열) 계획의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취득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
 - (공간분석) 자료는 되도록 공간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지역 내 환경 유해인자의 분포와 환경보건 영향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
 - (정보시스템의 활용) 자료수집시 환경정책·대기환경·물환경·상하수도·폐기물·화학물질 등 부문별로 구축된 환경정보망 및 환경보건 정보망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도 있는 자료를 수집·활용하도록 함
- ※ 향후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할 예정('22년 1월 이후 시스템 공개 예정)

❖ 지역 환경보건 현황조사의 주요 항목 ❖

	구분	주요 항목
일반 현황	인구	- 지역별 인구 - 영유아 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비율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비율
	지역	- 지역내 교통(차량등록대수, 교통량 등) 및 도로 현황 - 녹지환경(도시공원 등)

	구분		주요 항목
환경 위해 및 환경 보건 현황	일반 환경	대기	- 초미세먼지PM_{2.5} 미세먼지PM ₁₀ 농도, 주의/경보 발령일수, 고농도일수 - 오존O₃ 농도 , 주의/경보 발령일수 - SO ₂ , NO ₂ , CO, 납(Pb) 오염도, 환경기준 초과현황 - 지역내 대기오염배출량 추이
		수질	- (수돗물,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기준 초과현황 - 하천·호소 수질 오염도 및 기준초과 현황 - 폐수발생·방류량 추이
		토양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폐기물	- 지정폐기물 발생량
		화학물질	-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기후변화	- 폭염일수, 호우일수
	생활 환경	실내공기	- 다중이용시설/신축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기준초과 현황
		실내라돈	- 실내라돈조사 결과
		석면	- 석면건축물, 슬레이트시설물 등 현황 - 석면피해자(구제급여) 현황
		소음진동	- 소음·진동 민원현황 - 소음도 및 기준초과율(달성률)
		빛공해	- 빛공해 민원현황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기타 환경	위해시설	-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주요 위해시설 분포·현황
		오염시설	-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토양오염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소음·진동 배출시설, 오염시설 분포·현황
		어린이 및 민감 계층 활동공간 시설	- 어린이 활동공간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현황/실태조사 결과 등 - 기타 민감계층 활동공간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산후조리원, 병의원 등 현황/실태조사 결과 등
		기타 환경보건 위해 현황	- 화학사고 등 발생현황 - 지역내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등 현황/결과
건강 영향	아토피 피부염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천식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알러지성 비염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호흡기계)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심혈관계)뇌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암) 모든 암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기후변화) 온열질환		- (연령표준화) 유병률, 환자수, 진료비
기타	관련계획 및 시책		- 미세먼지, 교통소음, 조명환경 등 관리구역 지정 현황 - 환경보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환경보건 거버넌스		- 지역내 환경보건 거버넌스 현황 - 지역내 환경보건 시민단체 참여 사업 현황

2. 지역 이슈 수집 및 의견수렴

□ 지역 환경보건 이슈 수집 방법

- 지역의 주요 환경보건 현안·이슈를 수집하고 지역주민의 환경보건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민 설문조사, 지역전문가 포럼, 시군별 간담회, 언론분석, 민원분석, 국민청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지역 이슈수집 및 의견수렴 - 주요 내용 및 방법 ❖		
조사 항목	주요 내용	조사 방법 (예시)
환경보건 현안·이슈	- 지역 내 환경보건 피해 우려지역, 주요 유해인자 등 스크리닝	- 언론기사 분석 - 민원분석 - 시군별 간담회
환경보건 정책 수요	- 환경보건 정책 만족도, 목표 및 비전, 정책 우선순위, 시급성 등	- 주민 설문조사 - 전문가 포럼 - 시민단체 회의 - 시군별 간담회
환경보건 현황 인식	- 환경유해인자별 심각성, 환경보건 피해 정도 및 변화 추세 등의 인식	- 주민 설문조사 - 전문가 포럼
환경보건 교육· 정보제공 현황 및 수요	- 환경보건 교육·정보 노출도, 만족도 등	- 주민 설문조사

제6장 주요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 부문의 구성

○ 아래 <표>에 제시된 **주요 계획부문과 항목**들을 바탕으로, 지역계획의 **목표·비전 및 주요 전략**에 맞추어 지역환경보건계획의 계획 부문을 구성함

※ 제시된 모든 항목을 그대로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현안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집중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부문 ❖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 환경유해인자(일반환경, 생활환경)의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 환경유해인자 대책 마련
 - 환경오염 건강피해 우려지역의 대책 마련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 시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1) 환경유해인자의 조사 및 모니터링·감시

- 지역 내 주요 환경유해인자(일반환경, 생활환경)의 분포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감시 계획 마련
- 환경보건 기초조사, 측정망 등 조사·연구 강화
-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활성화 등

(참고) ❖ 환경보건법 및 조례 상의 환경보건 조사·감시 관련 기능 ❖			
환경보건법			조례제정
조문	내용	법상 권한주체	
제11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환경부	서울
제14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부	충남
제14조의2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의 실태조사	환경부 or 시도	-
제15조제1항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충남
제15조제2항	역학조사	환경부 or 지자체	서울, 충남
제21조	환경보건지표 개발	환경부	충남
※ 현행 환경보건법 상 환경유해인자의 조사·감시 기능 대부분이 국가 고유기능으로 규정되는 듯 보이나, 지역기반 환경보건 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역 단위의 조사·감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서울·충남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으로 수행 중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전략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1-1.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1-2.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1-3.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실태 조사**
 - 신규 **환경유해인자** 발굴
 - 기후변화에 관한 **원헬스 모니터링**
 - 식품 내 유해물질 **평가·모니터링** 대책 마련
 - 서울형 **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 경기(2021(안))
 - 대기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실내공기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유해화학물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충남(2017)
 - 유해중금속 **노출경로조사** 및 저감방안
 - 학교 주변 대기오염수준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관리
- 충남(2012)
 - 환경보건 **측정기반** 구축
 - 환경위해성 **측정망** 운영
 - 개발사업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활성화

[2] 환경유해인자 대책 마련

□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주요 환경유해인자(일반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 마련

- (생활환경) 실내공기질, 라돈, 석면, 소음·진동, 빛공해, 전자파 등 생활환경 불편·위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
- (화학물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대응 관련 대책
- (일반환경) 대기, 기후변화,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매체별 대책

※ 지역환경보건계획은 각 매체별 환경계획에 대한 **수용체 관점의 상위전략계획**의 성격

- 최근 수립·시행된 매체별 관련 **법정계획**을 검토하여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용체 관점의 관리전략을 마련하며,
- 마련된 관리전략은 향후 매체별 관련 법정계획 수립에 반영함이 필요

□ 생활환경 부문

- 실내공기질, 라돈, 석면, 소음·진동, 빛공해, 전자파 등 생활환경 불편·위해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대책

(참고) ❖ 생활환경 부문 주요 법령 및 계획 ❖

법률명	계획명	
	국가	지자체(시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시행계획(시도)
	-	라돈관리계획(시도, 요청시)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소음·진동관리 시행계획(시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관리 시행계획(시도) 석면안전 관리계획(관리지역 지정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빛공해방지계획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 **전자파**의 경우 현행 법령 상 환경유해인자로 관리되지 않으나,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서 사전예방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노출실태 파악, 사전예방적 관점의 노출 최소화 전략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전자파 관리의 법제화 추진 계획 마련
- 경기·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를 마련·시행 중

□ 화학물질 부문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시행 중

※ 예외) 서울시는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부문을 통합한 조례 및 계획 운영 중

(참고) ❖ 지역별 화학물질 조례 및 계획 현황 ❖

지역	조례	계획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충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관리 계획
충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전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전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경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경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과제 2-1)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 (2-1-1) 실내공기 관리 강화
 - (2-1-2) 실내라돈 관리 강화
 - (2-1-3) 인공조명(빛공해) 관리 강화
 - (2-1-4) 전자파 관리 강화
 - (2-1-5) 소음 및 진동 관리 강화
 - (2-1-6) 석면 안전 관리 강화
- (과제 2-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2-2-2)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강화
 - (2-2-3)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 기타
 - (1-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
 - (1-2-4)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생활환경 위해요소 감시 및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 소음·진동, 빛공해, 생활용수, 악취, 방사성물질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구축
 -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 독성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기반 마련
- 서울(2013)
 - 실내공기질 개선
 - 생활환경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 소음(도로교통, 항공, 층간)
 - 생활방사선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 전자파 노출 관리대책
 - 유해물질 노출관리
 - 7대 유해물질 선정 및 관리 대책
 - 인공향 성분 노출조사 및 대책 수립
 - 소규모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실태 및 노출 저감대책 마련
 -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생산유통 관계자 협약 체결
 - 유해물질 저감형 방역사업 개발
 - 대기중 초미세입자(디젤연소분진) 관리 대책
- 경기(2021(안))
 - **실내공기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유해화학물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대기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 충남(201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라돈**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관리
 -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운영
 - 인공 **빛공해**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 **송전선로** 주변지역 역학조사
 - **유해중금속** 노출경로조사 및 저감방안
 - 학교 주변 **대기오염** 수준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관리

[3] 환경오염 건강피해 우려지역 대책 마련

- 지역 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파악, 지역별 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
 - 환경성질환의 발생이 많은 지역
 - 환경오염피해 우려 또는 발생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거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
 - 언론분석, 민원분석, 지역 이슈수집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려가 제기된 지역 등

(참고) ♦ 관련 법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환경보건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 조사 기반 구축
- 경기(2021(안))
 - 대기오염 취약지역 및 민감계층 주거지역을 교차분석, 건강위해 우려지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환경보건 문제지역 실태조사 시행
 - 주요 환경보건 문제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 조사 연구
- 충남(2017)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1) 민감·취약계층 대책 마련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방어력이 낮은 민감·취약계층의 노출과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민감계층

○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참고)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계획 포함 사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참고) ❖ 환경보건법 ❖ - 민감계층 보호 관련 규정

환경보건법 제14조의2(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 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부터 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지원)까지 어린이 건강보호 관련 조항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과제 2-3)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2-3-1) 어린이·여성·노인 대상 환경보건 지원사업 강화
 - (2-3-2)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 (2-3-3)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민감계층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내실화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 강화 시행
 - 서울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추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정보제공, 교육·홍보, 체험관 운영
- **초등학교** 환경보건 협력사업
 - 초등학교 공기질 모니터링
 - 대기오염과 건강에 관한 초등학교 대상 교육 및 홍보
- **고령 및 사회·경제적 취약인구**의 환경보건 대책 수립
 - 취약인구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 시범사업

○ 서울(2013)

<민감계층 환경보건 관리 강화>

- **어린이** 민감성 유해물질(브롬화난연제, 프탈레이트, 농약) 관리
- **노령인구** 건강수명 +10(%) 프로그램

<학교 환경보건 인증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 환아** 자가 관리 향상을 위한 캠프
- **어린이 안심학교** 인증 프로그램 (아토피 안심학교, 발암물질 안심학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환경보건 실태파악 및 개선>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방안 마련

○ 경기(2021(안))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환경성질환 어린이** 가구 발굴 및 유해환경 개선
- **취약계층 어린이** 체험형 교육서비스 강화
-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거주공간** 환경유해물질 조사 및 관리 강화
- **학교, 집, 어린이집**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및 환경안전 관리 강화
- (대기질 능동감시 및 대응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진단 및 지원사업 추진

○ 충남(2017)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 **어린이 꿀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 주변 대기오염수준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관리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2]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 환경오염 피해 발생 및 우려에 대해 효과적·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특히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 관련 제도들이 피해자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
 - 환경오염피해 발생 또는 우려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신고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우려지역의 선제적 조사·모니터링 추진
 - 환경오염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단편적 피해구제 뿐 아니라 주민 건강피해의 사후관리, 지역의 친환경 정비 등 종합적 복구·재생 대책을 마련·추진

(참고) ❖ 환경오염 건강피해 대응 및 피해구제 관련 법령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석면피해구제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전략 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 (과제 3-1)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 (3-1-1) 환경성 건강피해 발생시 신속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 (3-1-2) 환경보건 건강피해 사후관리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 (3-1-3)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시스템 구축
 - (과제 3-2)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및 환경개선 체계 구축
 - (3-2-1)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비
 - (3-2-2) 환경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 (3-2-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
 - (3-2-4) 석면피해 구제서비스 강화
 - (3-2-5)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환경보건 건강피해 대비 매뉴얼 정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경기(2021(안))
 -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거점 구축
- 충남(2017)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조직, 전문역량 및 과학 기반, 시민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각적 기반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 시민소통·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1] 지자체 조직, 조례 등 신설·정비

□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보건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 (예) 환경보건정책 추진조직 신설·정비
- (예)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설치·운영
- (예) 환경보건 조례 제정

(참고) ❖ 관련 법령 ❖ - 지역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참고) ❖ 환경보건 조례 제정 현황 ❖ <2021.11.30. 기준>

-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중 8개 지역에서 제정 ('21년 6개)
-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개 지역에서 제정

구분	지역	조례명	제정일자
시도	서울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조례	2018.1.4
	인천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2021.11.8
	울산시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2021.8.5
	경기도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2021.10.6
	충북도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2021.11.5
	충남도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2014.1.6
	전북도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2021.8.13
	경남도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2021.11.4
시군구	수원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2020.3.13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과제 4-1)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 (4-1-1)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 (4-1-2)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13)
 - 환경보건 **조례** 제정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 어린이 환경보건 **전담부서** 설치
 - 기후변화 건강적응 대책 **전담부서** 설치
- 경기(2021(안))
 - 환경보건 **조례** 제·개정 추진 등
 - 경기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 경기도 환경보건 대응능력 및 **조직** 강화
- 충남(2012)
 - 환경보건정책 **추진조직** 신설
 - 환경보건**조례** 제정

[2] 전문역량 및 과학기반 강화

□ 환경보건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전문기관·전문인력 및 과학기반 등을 구축·강화

- 지역환경보건센터 등 전문기관 설치·강화
-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등
- 환경보건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등 데이터 활용체계 강화
- 환경보건지표의 개발·활용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과제 4-4)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
 - (4-4-2)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추진
- (과제 4-2)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 (4-2-1) 환경보건지표 기능 재정립 및 운용 시스템 구축
 - (4-2-2)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공개
 - (4-2-3) 환경보건 관련 데이터의 통합분석 및 활용
- (과제 4-3) 환경보건 조직 역량 강화
 - (4-3-2)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환경보건 지원센터 협력사업 추진
 - 환경보건 국제기구와의 협력
 - 환경보건 자료 정비 및 정보 활용성 강화
 - 서울시 환경보건 정보시스템 구축
 - 서울형 환경보건 지표 개발
- 서울(2013)
 - 환경보건 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 환경성질환 전담 환경보건센터 유치
 - 지역사회 환경보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경기(2021(안))
 -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취약지역 및 계층 자료 연계를 통한 환경보건 피해 예측모델 개발
 - 경기도형 환경보건지표 개발
- 충남(2017)
 - 환경보건인력 강화 방안
 - 환경-보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충남형 환경보건지표 개발·활용

[3] 시민소통 · 교육 및 거버넌스 강화

- 환경보건 정책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 시민대상 환경보건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참고)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30) 관련 항목 ❖

- (과제 4-1)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 (4-1-2)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지역 환경보건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전문가 포럼 운영
 - 환경보건 분야 시민단체 활성화 유도
- (과제 4-4)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
 - (4-4-1) 전국민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 추진

(참고) ❖ 지역계획 수립 사례 ❖

- 서울(2021)
 - 환경피해 건강영향에 대한 **시민소통** 제고
- 서울(2013)
 - 환경보건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시민 참여형** 어린이 민감 유해물질 저감방안 마련
 - 발암물질 없는 서울 만들기 **캠페인** 행사
 -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 기능 강화
 -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
- 경기(2021(안))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및 분과위원회 운영
 - 민관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 <환경보건 연구지원 강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 환경보건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정보공개** 방안 마련 및 **접근성** 향상
- 충남 2017
 - **환경보건열린포럼** 구성·운영
 - **시민참여형** 환경보건 **리빙랩** 시범사업
 - 환경보건 **교육** 확대강화
 - 우리동네 **환경위해정보** 소통

제7장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 ◇ 수립된 지역환경보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및 환류

□ 계획의 추진체계

- (조직) 과제별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 작성
- (재정) 과제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일정) 과제별 추진 일정, 로드맵 마련
- (이행관리) 추진실적의 점검·보고 체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 등 마련

□ 계획의 이행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 계획수립 후 이행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계획의 이행여부, 추진실적 및 달성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계획추진에 환류(피드백)함
- 주요 추진과제별 달성여부의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달성도를 점검함
- 정기적인 이행점검 일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향후 계획추진에 반영함(환류)
 - 환경부 차원의 연간 추진실적 점검* 외에 자체적인 점검 일정과 절차를 마련함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 (예) 지역환경보건위원회에 매년 추진현황(성과지표별 달성도 포함) 및 향후 계획의 보고

-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후속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부록 I】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1 비전 및 목표



2/ 추진방향

정책방향

- 환경보건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대응·복구’까지 포함하는 ‘**지역사회환경 종합적 예방·관리**’ 확장
 - **(사전 관리)**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기확인된 환경유해인자의 적극적인 노출 관리 실시
 - **(사후 대응)** 환경오염피해 사전-발생-사후 전 과정에서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

정책영역

- 기존 환경유해인자와 더불어 미지의 유해요인 감시·관리 확대 및 정책 단위의 지역화
 - 경제 성장·기술 혁신·기후변화·세계화 등에 따른 기존 및 신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사전 감시 및 관리 범위 확대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보건정책뿐 아니라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추진

추진주체

- 정부·지자체·전문가·지역 주민 등 **국민참여 거버넌스 확립**
 - 지역거점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 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위한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체계 구축

성과관리

- 환경보건종합계획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체계 정립**
 - 지역별/매체별 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지침 제공
 -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5년 후 계획의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필요시 수정계획을 수립

3 전략별 주요 과제

전략 01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주요과제	세부과제
1.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1-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및 고도화 1-2. 전생애 건강영향평가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 1-3. 생활환경위해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화 1-4. IoT 기술 기반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 구축 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 1-6. 환경오염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기반 구축
2.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체계 마련	2-1.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력 강화 2-2.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조사 및 모니터링 2-3.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2-4.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 2-5. 환경유해 미생물 건강위해 모니터링
3.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3-1.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3-2.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고도화 및 환류 체계 구축

전략 02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주요과제	세부과제
1.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1-1. 실내공기 관리 강화 1-2. 실내라돈 관리 강화 1-3. 인공조명(빛공해) 관리 강화 1-4. 전자파 관리 강화 1-5. 소음 및 진동 관리 강화 1-6. 석면 안전 관리 강화 1-7. 수용체 중심의 환경기준·정책 수립 및 평가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2-1.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평가 2-2.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강화 2-3. 산업계 화학물질 자율관리 지원 2-4. 화학물질 유통 사후관리 강화 2-5. 산업계 제도 이행 지원 강화
3.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3-1. 어린이·여성·노인 대상 환경보건 지원사업 강화 3-2. 어린이 생활환경 안전관리 강화 3-3.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전략 03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주요과제	세부과제
1.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1-1. 환경성 건강피해 발생시 신속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1-2. 환경보건 건강피해 사후관리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1-3.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시스템 구축
2.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및 환경개선 체계 구축	2-1.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비 2-2. 환경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2-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 2-4. 석면피해 구제서비스 강화 2-5.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전략 04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주요과제	세부과제
1.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1-1.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1-2.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1-3.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2. 환경보건 조사·연구 결과 활용 활성화	2-1. 환경보건지표 기능 재정립 및 운용 시스템 구축 2-2.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및 공개 2-3. 환경보건 관련 데이터의 통합분석 및 활용
3. 환경보건 조직 역량 강화	3-1. 환경보건 관련 조직 정비 추진 3-2. 환경보건센터 기능 강화 3-3. 환경보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4.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	4-1. 전국민 생애주기별 환경보건 교육 추진 4-2. 환경보건 전문가 양성 추진 4-3. 환경보건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R&D 추진 4-4. 국가 환경보건 바이오뱅크 구축 및 운영 4-5. 환경보건 국제 네트워크 확대

【부록 II】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및 현황

- 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혹은 최근 수립되었거나 수립이 추진 중인 사례들을 아래 제시함
- 대부분의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예시로 활용
(수립된 지역계획은 별도의 파일로 제공)

지역	계획명	계획기간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2021~2030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2013~2017	
경기도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	2021~2030	추진 중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21~2030	추진 중
	제2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17~2020	
	제1차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12~2016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환경보건 종합계획		추진 중

【부록 III】 지역 현황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목록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내 정책지원시스템에서 지역별 데이터 제공 예정인 항목 표시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일반 현황	인구	총인구	○	국가통계포털 KOSIS (행정 구역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2	
		영유아 인구비율	○	국가통계포털 KOSIS (5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2	
		65세 이상 인구비율	○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4&conn_path=I2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복지로 복지통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수, 수급자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1&datsCINo=1011&datsCICrit=WS	
		독거노인	○	국가통계포털 KOSIS (독거노인가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conn_path=I2	
		장애인 비율	○	국가통계포털 KOSIS (시군구별 등록장애인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9&conn_path=I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6&conn_path=I2	
지역	교통 및 도로 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TAC_TAT&patternId=4	
		도로연장	○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일반현 황 (계속)	지역 (계속)	독지면적	○	국가통계포털 KOSIS (독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037&conn_path=I2	
		공원	○	국가통계포털 KOSIS (공원수, 면적) 국토모니터링보고서 (공원접근성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5&tblId=TX_315_2009_H1126&conn_path=I2 http://map.ngii.go.kr/ms/pblict/nationalYearBook.do	시설 수, 면적
환경 위해 및 환경 보건 현황	일반 환경	초미세먼지(PM2.5) 농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76&conn_path=I2	
			○	국가통계포털 KOSIS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76&conn_path=I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일수, 고농도일수	X	대기환경연보		
		오존O3 농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오존)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74&conn_path=I2	
		오존 주의/경보 발령일수	X	대기환경연보		
		SO2 농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아황산가스)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71&conn_path=I2	
		NO2 농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이산화질소)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73&conn_path=I2	
		CO 농도	○	국가통계포털 KOSIS (일산화탄소) 대기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75&conn_path=I2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환경 위해 및 환경 보건 현황 (계속)	일반 환경 환경 보건 현황 (계속)	납(Pb) 농도	O	국가통계 포털 KOSIS (중금속농도) 대기 환경연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70&conn_path=I2	
		대기 환경기준 초과 현황	X	대기 환경연보		
		대기오염배출량 추이	O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배출량통계	http://airemiss.nier.go.kr/user/boardList.do?handle=160&siteId=airemiss&id=airemiss_030500000000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기준초과 현황	X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하천·호소 수질 오염도 및 기준초과 현황	X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토양	폐수 배출량, 방류량 추이	O	국가통계 포털 KOSIS (폐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1_0100069&conn_path=I3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X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https://sgis.nier.go.kr/web/soilPollution%3bjsessionid=XvKQg_4vvJB2rfXE5jEw6Ot53ujyqFddK6-unJVAIfSPc9bz2Nv_1706296391?pME NU_NO=17	
		지정폐기물 발생량	O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https://www.recycling-info.or.kr/sds/apnProcessIndex.do?menuNo=M130311	
		화학물질 배출·이용량	X	화학물질 배출·이용량 정보	https://icis.me.go.kr/prtr/prtrInfo/chartAreaSearch.do	
		폭염일수, 호우일수	O	기상청 기상자료개발포털	https://data.kma.go.kr/climate/heatWave/selectHeatWaveChart.do?pgmNo=106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환경 위해 및 환경 보건 현황 (계속)	생활 환경	실내 공기	X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대중교통차 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기준초과 현황				
		실내 라돈	X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석면	X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a href="https://asbestos.me.go.kr/user/da/asblvtRstO
penViewList.do">https://asbestos.me.go.kr/user/da/asblvtRstO penViewList.do	
			X		—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기타 환경	소음·진동	X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환경부)	http://www.noiseinfo.or.kr/noise/statistics.do <a href="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
ad.do?menuId=10276&seq=7650">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 ad.do?menuId=10276&seq=7650	
		빛공해	X		—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위해시설	O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지도	<a href="https://www.kicox.or.kr/home/mwrc/policyRsr
ch/fdrmPbictn/fdrmPbictn04.jsp">https://www.kicox.or.kr/home/mwrc/policyRsr ch/fdrmPbictn/fdrmPbictn04.jsp	
			X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오염시설	X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토양오염시설(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소음·진동 배출시설 분포, 현황		지자체 자체 자료 활용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환경 위해 및 환경 보건 현황 (계속)	어린이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시설 기타 환경 보건 현황 (계속)	어린이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statHtm/statHtm.do?orgld=338&tblId=DT_2CA0211R&conn_path=I2	
		유치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https://kess.kedi.re.kr/	
		초등학교	○			
		노인요양시설	×	국가통계포털 KOSIS (노인복지 생활시설)	https://kosis.kr/statHtm/statHtm.do?orgl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2	
		장애인시설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산후조리원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s.jsp?PAR_MENU_ID=03&MENU_ID=0321	
		병의원	○		https://kosis.kr/statHtm/statHtm.do?orgld=117&tblId=DT_117049_A001&conn_path=I2	
		어린이 등 민감계층 활동공간 실태 조사 결과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기타 환경보건 위해 현황	화학사고 등 발생현황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	
		지역내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등 현황/결과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구분	조사 항목	종합정보 시스템*	관련자료	URL	비고
건강 영향	아토피 피부염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4thDsinfo.do#none	
	천식	○			
	알러지성 비염	○			
	(호흡기계)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			
	(심혈관계) 뇌경색증, 허혈성 심질환	○			
	(암) 모든 암	○			
	(기후변화) 온열질환	○			
	관련계획 및 시책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기타	환경보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지역내 환경보건 거버넌스 현황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지역내 환경보건 시민단체 참여 사업 현황	×			지자체 자체자료 활용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및 향후 과제

제4장 / 결론 및 향후 과제



□ 과업의 주요 성과

- 본 과업에서는 환경보건법 개정('21.1)으로 각 광역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광역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이를 위해 관련 현황과 자료들을 분석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경기도), 지자체 관계자·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협의 등을 실시함
- 과업의 성과로 마련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본 보고서 제3장에 수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지침이 각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
- ※ 경기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범 수립 결과는 별권의 보고서¹⁹⁾로 발간

□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 본 과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지역계획의 시범수립을 실시하고 지역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환경보건 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는 아직 시작 단계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 각 지자체의 조례 마련, 계획수립, 조직·인력 강화, 전문성 강화,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 환경보건 분야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21.1,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19) 이은환 외 (2021)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경기도 환경보건계획(안)-」
주관: 환경부, 수행: 경기연구원

-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의 질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특히 환경보건 분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술적 요구도가 높은 편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분석도구,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
 - 다양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과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지역의 계획수립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
 - 환경보건센터 등을 통해 분석도구의 활용 등에 관한 지자체 교육·컨설팅도 실시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리스크 목록과 분석도구인 VESTAP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 또한 여건과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될 각 지자체 계획에 대해 지역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필요
 - 지역계획 수립 후 매년 실적점검 단계에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공동발전의 기회를 가짐
 - 또한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실태와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및 지원사항을 도출
- 금번의 첫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통해 각 지역에서 환경보건이라는 정책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환경보건 현안과 여건을 파악하여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번째 작업이 수행될 예정

-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수립된 지역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며 발전시켜나갈 예정
- 5년 뒤 수정계획 수립 이전에 방법론과 분석도구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참 / 고 / 문 / 헌 /

[국내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명수정·정우현 (2019)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주관: 환경부, 수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산업통상자원부 (2016.12)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행: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9.6)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윤정호 (2021.6.29)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내부 발표자료)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담당자 설명회(주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식경제부 (2011.7)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가이드」

최경호 외 (2013.8) 「서울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 연구」 주관: 서울특별시, 수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사)환경과문명

충청남도 (2012.7)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2~2016년)』

충청남도 (2017.2)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2020)』

환경부 (2020.12)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환경부 (2020.12)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

환경부 (2021.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국외문헌]

Garcia Contreras, A. F., M. Ceberio, and V. Kreinovich (2017) “Plans Are Worthless but Planning Is Everything: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Eisenhower's Observation”, Departmental Technical Reports (CS: Computer Science) 1102, ScholarWorks@UTEP,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https://scholarworks.utep.edu/cs_techrep/1102

[법령자료: 법률 및 조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강원도 환경보건 조례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